

#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18. 4 . . |
| 발 의 자 | 김복자의원 외 6명  |

#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복자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8. 4.

발 의 자 : 김복자 · 김근아 · 김인배 · 김재상  
박세진 · 윤종호 · 정하영 의원(7인)

## 1. 제안이유

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출산가정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 
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부  
및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임신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 
주차요금 감면(50퍼센트) 조항 추가(안 제4조의2)
-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(안 제10호)
  -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(안 제11호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  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  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의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: 50퍼센트 감면(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: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)
11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(다만,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): 50퍼센트 감면(3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의2(주차요금감면)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| 제4조의2(주차요금감면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9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0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: 50퍼센트 감면(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: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)</u>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1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(다만,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): 50퍼센트 감면(3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)</u>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~ 12. 생략

#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(안 제4조의2 제10호, 제11호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면제에 따른 세입감소  
부분으로 예상 세입 감소 추계가 어려움  
(안 제4조의2 제10호, 제11호)

### 4. 작성자

-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이민섭(054-480-6274)